

태권도심사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권도심사관리규정에 의한 태권도 승품·단 심사(이하 “승품·단 심사”라 한다.)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승품·단 심사업무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14.>

제2조(적용범위) 승품·단 심사의 위임 및 시행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칙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15. 4. 14.>

제3조(심사구분)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4조 1항에 의한 심사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승급심사 : 국기원이 인정한 태권도 사범 자격을 갖춘 자가 태권도 유품·단자가 아닌 일반 수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
 2. 승품심사 : 만15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 단, 4품 응시는 만18세 미만자로 한다.
 3. 승단심사 : 만1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
 4. 특별심사
가. 장애인(청각, 지적, 시각, 지체)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사
나. 월단 등 정책적 판단에 의해 시행하는 심사
 5. 명예단심사 : 태권도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수여자격 심사
 6. 추서단심사 : 태권도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태권도 고단자가 타계했을 경우 상위 단 추서 자격 심사
- ② 위 4호 특별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5. 4. 14.]

제4조(심사과목)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실기심사는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격파 등 해당 승품·단 심사에 필요한 과목으로 시행한다.
 2. 이론심사는 필답, 논술 등 과목으로 시행한다.
 3. 필요시 각 품·단별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품·단별 심사과목은 [표 1]의 품·단별 표준심사과목을 준수해야 한다.
- ③ 위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심사과목 외에 심사과목을 추가 신설할 수 있다.
- ④ 장애인은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 별도로 심사과목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4. 14.]

제5조(심사수수료) ① 국기원은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5조 2항 1호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임 및 시행수수료를 부과한다.
 1. 국기원이 승품·단 심사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 시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국기원으로부터 심사를 위임받거나 직접 시행하는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은 심사 위임 및 시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는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5조 2항 2호와 3호를 준용하여 심사수수료를 책정,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심사위임 및 시행수수료는 물가변동을 및 원가조사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④ 해외 심사수수료는 국가별 국민의 실질적 구매력을 감안한 국민총소득(GNI : Gross National Income)에 따라 등급을 두어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수수료를 감면해 부과할 수 있다.
 1. 미수교국 등 보급 차원에 있는 정책적인 국가
 2.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을 당한 지역 및 국가
 3. 기타, 감면이 요구된다고 판단된 지역 및 국가
 4. 국가가 인정하는 특수장애우 및 극빈자
- ⑥ 위 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5. 4. 14.]

제6조(응시자격)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6조 2항에 따라 승품·단 연한 및 연령에 의한 응시자격기준은 [표 2]와 같이 정한다.

- ② 위 1항 외에 보수교육 등을 응시자격으로 정할 수 있고,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③ 응시자가 국적 이외 제3국에서 응시하고자 할 경우 해당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4. 14.]

제7조(심사추천권) ① '심사추천권'이란 승품·단 심사와 관련해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 태권도 사범 등에게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심사추천권은 국기원 4단 이상자로 사범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부여한다.
 1. 국기원으로부터 심사 추천 권한을 부여받은 사범은 자신이 직접 지도한 응시자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해외 심사추천권자는 보유단 미만자의 승품·단 심사 응시자에 대해 심사를 추천할 수 있다.
 3. 심사추천권자가 없는 해외 응시자의 경우 국기원 심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③ 국기원이 국가단위로 심사추천권을 위임하지 않은 국가는 해당국가의 국기원 등록도장 사범이 국기원에 직접 심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 ④ 국기원은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 태권도장에 심사추천을 위한 ID를 부여할 수 있다.
- ⑤ 심사추천권자는 국기원에게 부여받은 심사추천 ID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심사추천권자는 직접 지도한 수련자가 승품·단 심사에 응시할 경우 심사추천 ID를 사용한다.
2. 심사추천 ID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3. 심사추천권자는 직접 지도한 수련자가 아닌 경우 심사시행단체에 승품·단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 ⑥ 위 항에 정하지 않은 것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4. 14.]

제8조(자격특례)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6조 3항에 따라 응시자격 특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태권도 유공자와 관련해서는 7단 이하에 대해 연한 및 연령의 자격기준 단축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적용기준은 [표 3]과 같다.<개정 2015. 4. 14.>
2. 대학(태권도학과 · 태권도전공)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자 중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3학년 2학기 종료 전 까지 3단을 보유하고, 4학년 2학기 재학 중인 자) 및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졸업예정자(학사 이수학점 중 80%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4단의 응시자격을 각각 부여한다. 단, 월단은 허용치 않는다.<개정 2015. 4. 14.>
3. 월단심사 및 기타 자격특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자격특례에 관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심사시행 위임 및 승인)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9조 2항 2호에 따라 심사위임단체가 심사시행을 위임할 경우 계약 체결을 통해 권한을 부여한다.

- ②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이 심사위임을 부여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기원에 제출해야 한다.
 1. 태권도 승품·단 심사 위임신청서
 2. 승품·단 심사 연간 시행계획서
 3. 승품·단 심사 시행수수료 승인요청서
 4.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 ③ 기존 심사위임단체는 심사위임계약 만료 2개월 이전에 심사위임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통해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승품·단 심사위임에 따른 계약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4. 14.]

제10조(심사위임 및 시행단체의 권한과 의무) ①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위임단체는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9조 2항에 따른 승품·단 심사시행을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심사위임단체는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2조 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시행단체에 대해 위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심사시행단체는 위임받은 심사 시행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②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는 태권도 심사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심사위임단체는 매년 12월말까지 심사평가위원 구성과 연간 심사일정 등을 포함한 심사시행 계획을 국기원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심사위임단체는 심사시행단체로부터 승품·단 심사시행에 따른 심사자명부[표 4]와 심사결과를 받아 15일 이내에 국기원에 보고해야 한다.
4. 심사위임단체는 위임수수료와 심사시행단체의 시행수수료를 취합하여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는 심사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5. 4. 14.]

제11조(심사시행) ①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는 심사계획에 따른 심사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심사를 시행해야 한다.

1.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가 심사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기원에 심사평가위원 또는 감독관을 요청, 시행해야 한다.
 2. 태권도 1~4품 및 1~3단까지는 실기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4, 5단은 실기와 필답심사를 하며, 6단 이상은 실기와 논술심사를 시행한다. 단, 심사위임단체는 필요시 국기원이 규정한 심사과목 이외의 과목을 추가하여 심사시행단체에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3. 태권도 4단 이상 심사는 국기원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위 1항 3호 정기심사에서 1개 과목이 실격한 경우, 1회에 한해 심사수수료를 면제받고 실격과목에 대해 차기 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수시심사는 제외된다.
- ③ 특별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위 1항 2호의 필답 및 논술심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⑤ 논술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응시자는 자국어로 작성한 논술의 한국어 번역본 또는 영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⑥ 공정한 심사시행으로 응시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4. 14.]

제12조(심사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6조 3항에 따른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심사평가위원은 국기원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한다.
 2. 저단자심사평가위원은 태권도 6단 이상,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증 3급 이상의 소지자로 구성한다.
 3. 고단자심사평가위원은 태권도 9단,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증 1, 2급 소지자로 구성한다. (단, 해외의 경우 1~4품·단 심사평가위원은 태권도 4단 이상,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로 한다. 5, 6단 심사평가위원은 태권도 7단 이상, 7단 심사평가위원은 태권도 8단 이상,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증 1, 2급 소지자)
 4. 특별심사평가위원은 태권도 9단,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증 1, 2급 소지자로 구성한다.
- ② 고단자심사평가위원 및 특별심사평가위원은 국기원장이 임명한다.

- ③ 저단자심사평가위원은 승품·단 심사시행권한을 위임받은 단체장의 추천에 의해 국기원장이 임명한다.
 - ④ 저단자심사평가위원은 5단 이하의 태권도 승품·단 심사를 평가한다.
 - ⑤ 고단자심사평가위원은 6단 이상의 태권도 승단 심사를 평가한다.
 - ⑥ 특별심사평가위원은 해외, 기관, 국기원 방문 심사를 평가한다.
 - ⑦ 심사평가위원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심사과목별 심사평가위원은 각 3인 또는 5인으로 운영하고, 응시자 및 심사특성에 따라 심사평가위원 인원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2. 위 1호 외 심사진행요원은 심사시행단체가 자체적으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5. 4. 14.]

제13조(심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기원은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7조 1항에 따라 심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5. 4. 14.>

② 심사심의위원회는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여, 위원회별 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국기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 4. 14.>

③ 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사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제14조(심사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기원은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8조 1항에 따라 심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5. 4. 14.>

② 심사관리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국기원장이 임명한다.

③ 심사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사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제15조(감독관 구성 및 운영) ① 국기원은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9조 1항에 따라 감독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국기원장이 임명하여 파견한다.

③ 국기원장은 심사시행단체의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수석감독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수석감독관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4. 14.]

제16조(심사평가)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8조 2항 4호에 따른 심사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 과목별 평가기준은 [표 5]와 같다.
2. 실기심사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3. 실기심사 평가기준 및 요령은 [표 6]과 같다.
4. 필답심사 평가기준은 20문항 중 12문항 이상의 정답을 얻은 경우 합격 처리한다.
5. 논술심사 평가기준은 [표 7]과 같다.
6. 심사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과락이 되면 최종 불합격 처리한다.

② 심사과목별 채점표는 [표 8]과 같다.

③ 심사평가에 대한 심사결과표는 [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15. 4. 14.]

제17조(심사장)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8조 2항 2호에 따라 심사장의 제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실기 심사장의 최소 면적은 가로(세로) 15m × 세로(가로) 12m(180m² = 약 55평)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2. 품새 심사장의 면적은 가로 8m × 세로 8m(64m² = 약 19평)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1회 심사 시 15세 이상 응시자는 6인 이하, 15세 미만 응시자는 8인 이하로 한다.
3. 겨루기 심사장의 면적은 2인 기준으로 15세 이상 응시자는 가로 8m × 세로 8m(64m², 약 19평), 15세 미만 응시자는 가로 6m × 세로 6m(36m², 약 11평)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4. 격파 및 특기 심사장의 면적은 1인당 20m²(약 6평)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5. 실기 심사장의 대기 장소는 심사 과목당 33m²(약 10평)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6. 실기 심사장의 바닥은 안전을 고려해 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매트 조건을 갖춰야 한다.
7. 실기 심사장은 응시자의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및 재난시설 등의 안전이 허가된 장소여야 한다.

② 심사장 배치 및 평면도는 [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15. 4. 14.]

제18조(복장)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8조 2항 6호에 따른 복장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시행단체는 승품·단 심사 응시자가 [표 11]과 같이 국기원이 지정한 태권도복과 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2. 심사시행단체는 승품 심사 응시자에게 품 도복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단, 4품 응시자는 단 도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심사시행단체는 승단 심사 응시자에게 단 도복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4. 심사시행단체는 승품·단 심사 응시자가 도복 이외의 부속물(신발, 모자, 시계, 반지, 목걸이, 귀고리 등)을 착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5. 심사시행단체는 승품·단 심사 응시자가 도복 이외의 복장은 착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여성 심사 응시자의 경우 도복 상의 안에 백색 셔츠를 착용할 수 있다.
6. 심사시행단체는 승품·단 심사 응시자가 도복 부착물 허용범위는 [표 12]와 같다.
7. 심사시행단체는 심사평가위원과 진행요원이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심사시행단체는 위 1항 각 호에 대해 승품·단 심사 응시자에게 사전에 주지시켜야 하며, 위반 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승품·단 심사에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4. 14.]

제19조(안전대책)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8조 2항 7호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15. 4. 14.>

1. 심사시행단체는 승품·단 심사시행 시 의료진을 배치해야 한다.<개정 2015. 4. 14>
2. 심사시행단체는 응시자 및 심사평가위원, 진행요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심사시행단체는 응시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4. 심사시행단체는 겨루기 심사 응시자에게 안전보호용구(머리, 몸통, 낭심 등)를 착용시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20조(질서유지 및 징계) ① 심사장 내에는 감독관, 심사평가위원, 진행요원, 의료진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 ② 심사업무를 방해하거나 심사장 질서를 문란케 한 자는 징계할 수 있다.
- ③ 태권도심사관리규정과 태권도심사운영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4. 14.]

제21조(행정사항 등)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5조 3항에 따른 기타 행정처리 등을 정한다.

- ② 승품·단 응시자는 다음과 같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심사신청서 1부 [표 13]
 2. 국내 1품·단 응시자는 주민등록등(초)본 1부
 3. 사진(반명함 또는 증명사진) 1매
 4. 장애인은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8, 9단 응시자는 태권도 활동경력 및 이력서 각 1부
- ③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위 2항의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 ④ 위 2항의 제출서류 외 보수교육 등의 응시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⑤ "명예단"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명예단" 요청서 1부
 2. 이력서 및 공적조서 1부 [표 14]
- ⑥ 승품·단 응시자가 국적 이외의 제3국에서 응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중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재학(재직)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중 1부
 2. 군인의 경우 근무명령서
 3. 각국 대사관 입증서류
 4. 추천사범의 확인서
 5. 기타 심사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서류. 단, 정부위탁 등 특별한 국기원 교육 등에 참석하여 관련 이수증 및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예외로 한다.
- ⑦ 인적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인적사항 변경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2. 인적사항 변경의 법적 결정문 또는 변경 사실을 공증한 인증서
 3. 국기원이 발급한 품·단증 원본과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증명서[여권,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등]

4. 기타 변경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⑧ 응시자격 특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경기실적 특례자는 각 국가 태권도협회장 또는 주최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2. 공로실적 특례자는 공로를 증명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확인서

3. 본 규칙 제8조 1항 2호에 따른 자격특례자는 총 이수학점 대비 80% 이상의 학점 취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 재학증명서(4년제 대학교의 경우 4학년 2학기 재학증명서)

4. 기타 특례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5. 4. 14.]

부 칙 <제정 2010. 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 심사관리규정 및 심사운영규칙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개정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3.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6.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1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